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2012년도 요강

20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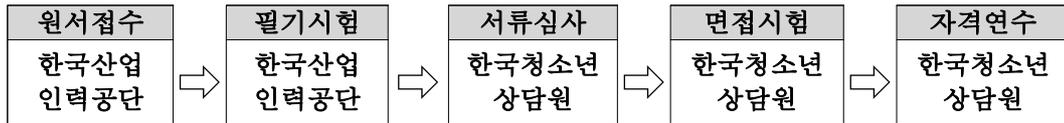


# 목 차

<b>2012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개요</b> .....	1
<b>I. 2012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안내</b>	
1. 응시자격 .....	2
2. 원서교부 및 접수 .....	5
3.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합격예정자 발표 .....	6
4. 응시자격 증빙서류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9
5. 면접시험 일시.장소 .....	11
6. 자격검정 합격자 발표 .....	11
7.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	11
8. 최종합격자 자격증 교부 .....	11
<b>II. 자격검정 응시 관련 참고사항</b>	
1. 응시자격 요건별 제출서류 .....	12
2.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15
3.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처(약도) .....	16
<b>III. 유의사항 및 문의 안내</b>	
1. 원서작성시 유의사항 .....	17
2. 시험 응시시 유의사항 .....	18
3. 자격검정 안내 및 문의처 .....	20
<b>[부록1]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작성 지침</b> .....	21

## 2012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개요

### ○ 2012년 자격검정 시행절차 변경



### ○ 주최 · 주관기관

- 주최 : 여성가족부
-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 ○ 주요 일정

- 시행 공고 : 2012. 1. 6(일간지, 홈페이지 공고)
- 원서교부 및 작성 : 2012. 1. 30 ~ 2. 8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q-net.or.kr](http://www.q-net.or.kr)(이하 공단 홈페이지)에서 작성
- 필기시험 : 2012. 3. 11(시험장소는 원서작성시 개별선택)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012. 3. 28
- 응시자격 증빙서류 접수 : 2012. 4. 2 ~ 4. 6(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중구 다산로 210 흥진빌딩 6층 한국청소년상담원 자격연수팀
- 필기시험 합격자(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2. 5. 2
- 면접시험 : 2012. 5. 13
  - 시험장소는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www.youthcounselor.or.kr](http://www.youthcounselor.or.kr)(이하 상담원 홈페이지) 공지
- 자격검정 합격자(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2. 5. 23
- 자격검정 합격자 자격연수 : 자세한 일정은 자격검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분산 연수 및 집중 연수 : 7월~10월 중 각급별 100시간 이상 연수
- 최종 합격자 자격증 교부 : 2012년 11월 중(자세한 일정은 추후발표)

### ○ 문의 · 안내

- 원서교부 및 작성/필기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팀  
(전화 : 1644-8000, 인터넷 홈페이지 [www.q-net.or.kr](http://www.q-net.or.kr))
- 응시자격 증빙서류 심사/면접시험 : 한국청소년상담원 자격연수팀  
(전화 : 02-2250-3128/3129 인터넷 홈페이지 [www.youthcounselor.or.kr](http://www.youthcounselor.or.kr))

# I 2012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 응시자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 3관련)

구 분	자 격 요 건
<b>1급 청소년 상담사</b>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b>2급 청소년 상담사</b>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b>3급 청소년 상담사</b>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 참고사항 1 : 청소년상담사 1, 2, 3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상담관련 분야(p.3 참조)를 전공하여야 함
- ※ 참고사항 2 :
  - 대학의 경우,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상담관련분야 9개 이름 중, '학자가 빠져 있더라도 관련 분야로 모두 인정
- ※ 참고사항 3 : 졸업 예정자의 경우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 ※ 참고사항 4 :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요건에는 연령을 제한하지 않음

1) 청소년상담사 응시제한자 및 취소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2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li> <li>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li> </ol> |
|---|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2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 항목 (청소년기본법 제 22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li> <li>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li> <li>3.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li> </ol> |
|---|

2)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p>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p>
--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인정 기준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 인정**

3) 상담실무경력 : [부록 1] 참조(p.17)

○ 응시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별표1)

응시등급	상담유형	실시경력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개인상담 : 전화상담이나 채팅상담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면 개인상담 경력을 인정**
  - 집단상담(집단원 5명 이상)
    - 1, 2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로서 실시한 경력을 인정
    - 3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에 실시 및 참가한 경력을 인정
  - 심리검사
    - 1, 2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만을 인정
    - 3급 : 별도의 심리검사기준을 두지 않음(출처와 용도가 분명치 않은 인터넷 검사 및 설문조사용으로 실시한 검사는 제외)
- ※ 응시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상담원 홈페이지 [www.youthcounselor.or.kr](http://www.youthcounselor.or.kr) 참조

○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9조)

- 다음 표에 제시된 기관에서 (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임. 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시설(청소년기본법 제17조) /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청소년기본법 제46조) /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정부기관, 공공상담기관, 법인체상담기관 및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민간상담기관

-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상담사 ‘상담실무경력’ 인정 민간상담기관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한 후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에 대한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

○ **상담실무경력 증빙 제출서류**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10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일시·장소·상담대상·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상담기관장의 직인(개인도장 불가)**이 날인된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별지 2호 서식)**를 상담원에 제출하여야 함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2.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접수 대상 및 기간

- 대상 : 신규응시자 및 재응시자 전원
- 기간 : 2012년 1월 30일 ~ 2월 8일(10일간)

### 2) 접수방법 : 인터넷 작성(별도 제출 없음) 후 응시수수료 납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 ※ 유의사항 : 신규응시자 및 재응시자 전원 응시원서작성 및 응시수수료 납부 필수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납부
- 응시원서만 작성하고 응시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원서접수마감 익일 12:00까지 납부하여야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표 분실시 시험 당일까지 재출력이 가능함
- **응시수수료 환불**은 응시원서 접수기간('12.1.30~'12.2.8) 내 취소자는 100% 환불하고, 필기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는 50% 환불
  - ※ 환불방법 : 환불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angdamsa>)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개별 신청 필수)  
단,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응시자격 유무를 원서접수 전** 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응시자격 검정요강**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 선택과목 변경을 원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원서접수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 선택과목 변경
-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장애여부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당해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장 관할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불가)
  - ※ 단,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인 수첩, 장애인등록증명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원본등 관련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여야만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3.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합격예정자 발표

1) 대 상 : 원서접수(검정수수료 납부자)가 완료되어 수험표가 출력된 자

2) 시험일시 : 2012년 3월 11일(일) 09:30 ~ 13:00(09:00까지 입실완료)

3) 시험장소 : 인터넷 원서접수(www.q-net.or.kr) 시 수험자가 개별선택 가능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 분	필기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1교시 (필수)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09:00까지	9:30 ~ 11:00(90분)
	2교시 (선택)	○ 비행상담 · 성장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11:50까지	12:00 ~ 13:00(60분)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1교시 (필수)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09:00까지	9:30 ~ 11:30(120분)
	2교시 (선택)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11:50까지	12:00 ~ 13:00(60분)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1교시 (필수)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09:00까지	9:30 ~ 11:30(120분)
	2교시 (필수 및 선택)	○ 학습이론(필수)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선택)	11:50까지	12:00 ~ 13:00(60분)

5) 시험당일 준비물

- 수험표 : 원서접수시부터 시험당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등으로 한다. 다만,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필기도구 : 검정색 사인펜(유성, 수성 무관)

6) 필기시험 문제 수 : 각 과목당 30문항, 5지 택일형(※ 출제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 7) 답안작성

- 검정색 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며, 채점은 전산자동판독 결과에 따름
- 수험자는 답안카드 작성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작성 요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특히, 문제지 형별 마킹을 잘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이며, 채점은 전산자동판독 결과에 따름

8) 합격기준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절대평가 기준)

9)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012년 3월 28일(수)

- 발표방법 : 공단 국가자격([www.q-net.or.kr](http://www.q-net.or.kr))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및 상담원 홈페이지 ([www.youthcounselor.or.kr](http://www.youthcounselor.or.kr)) 발표

## 10) 유의사항

- 수험원서의 허위작성,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답안카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학생증[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수험자는 09:0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09:3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객관식 답안카드 정정사항 발생 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및 형별 부분은 수정할 수 없음
  -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 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20분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실 수 없으므로 과도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 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해당교시)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하여야 함
-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불필요)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수 있으니,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시계 이용 불가)

**부정행위처리 규정**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카드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를 사용하여 답안카드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한 행위
12.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4. 응시자격 증빙서류 심사 및 합격자 발표

1)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 2012년부터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증빙서류 심사를 실시함.
- ※ 재응시자의 경우 2010년도 서류심사 합격자, 2011년도 서류심사(필기시험)합격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됨

2) 제출기간 : 2012년 4월 2일(월) 10:00 ~ 4월 6일(금) 18:00 (5일간)

3) 제 출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자격연수팀

4)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4월 6일까지 도착된 응시서류에 한하되,  
4월 6일 소인의 우편서류인 경우 접수 가능)

- ※ 주소 : <우>100-824 서울 중구 다산로 210 흥진빌딩내 한국청소년상담원 601호 자격연수팀
- ⇒발송봉투 겉면에 “<자격검정 응시원서>” 반드시 기재요망

5) 제출서류

○ 2012년도 신규응시자 중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u>졸업증명서 1통</u>
*해당자만 제 출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성적증명서 또는 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마지막 수업년도 전공커리큘럼) -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상담원 홈페이지 증빙서류 양식 작성, 제출)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 세부사항은 아래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고 참조

○ 동일 급수 재응시자

구 분	제 출 서 류
2010년도 서류심사 합격자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작성 및 검정수수료
2011년도 서류심사(필기시험) 합격자	납부 외 별도제출서류 없음.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원본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단, 동사무소 발급본 혹은 '인터넷 출력'은 원본임을 명시하는 증명서의 경우는 원본으로 인정)
  - ※ 인터넷 출력서류는 2012년 2월 1일 이후 출력 서류만 인정함
- 모든 서류에 수정테이프 사용 금함.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분야 이외의 학과로서 유사관련학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과목을 4과목(p.3참조)이상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상담관련과목(4과목 이상) 교과목 채택에 대한 증명서류
    - : 성적증명서 또는 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마지막 수업년도 학과 커리큘럼  
(예 : 2012년 2월 졸업자의 경우 2011년도의 1년간 학과 커리큘럼을 제출, 커리큘럼 이 2장 이상일 경우 각 장마다 직인 필수)
  - ⇒ 상담관련분야 연계전공자 및 부전공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과목을 4과목 (p.3참조) 이상 전공교과목(전공선택 혹은 전공필수)으로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 일반선택과목 등을 이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에는 각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 날인이 있어야 인정됨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을 제출
- 외국학위자의 경우, 관련서류(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공증하고 공증서류 원본과 관련서류 번역본을 제출해야 함.

○ 서류 제출후 유의사항

- 서류접수 상태 확인 필수 (상담원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서류 도착 및 미비서류 확인

6) 필기시험 합격자(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방법

- 발표일 : 2012년 5월 2일
- 방 법 :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http://www.youthcounselor.or.kr))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www.q-net.or.kr](http://www.q-net.or.kr)) 발표

## 5. 면접시험 일시·장소

### 1) 대 상

: 필기시험합격예정자 중 응시자격 증빙서류 심사 합격자 / 면접시험 재응시자

2) 일 시 : 2012년 5월 13일(일) 09:00~(시간대별로 대기)

3) 방법 및 장소 : 응시자격 증빙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시 공고

4) 면접수험표 착용 필수(상담원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 6. 자격검정 합격자 공고

1) 일 시(면접시험 합격자) : 2012년 5월 23일(수)

2) 방 법 : 상담원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http://www.youthcounselor.or.kr)), 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http://www.q-net.or.kr))

### 3) 재응시 규정

○ 면접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 서류심사 면제

## 7.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 ○ 연수 개요

- 장 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 대 상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자
- 연수비용 : 연수수료 및 숙식비용은 추후 공지
- 일 정 : 자세한 일정은 자격검정 합격자 발표시(2012. 5. 23) 공지  
· 분산 연수 및 집중 연수 7월 ~ 10월 중 각 급별 100시간 이상 실시

## 8. 최종합격자 자격증 교부

○ 교부일시 : 2012년 11월

○ 대 상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

### ○ 교부장소·방법

- 교부일정 : 상담원 홈페이지 공고 및 연수 수료자 대상 e-mail 안내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방문 직접 수령

**Ⅱ 자격검정 응시 관련 참고사항**

1. 응시자격 요건별 제출서류

○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b>(1)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b> ① 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②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b>(2)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b> ① 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②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③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상담원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b>(3)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b> ①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상담원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 2010년도 서류심사 합격자 및 2011년도 서류심사(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됨

○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b>(1)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b> ①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②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b>(2)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b> ①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②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③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상담원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써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b>(3)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b> ①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상담원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 2010년도 서류심사 합격자 및 2011년도 서류심사(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됨

○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b>(1)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자</b> ①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②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 원서작성기준시 졸업예정자인 경우도 4월 서류심사때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b>(2)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b> ①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②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③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상담원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b>(3)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b> ①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②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상담원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b>(4)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b> ①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②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상담원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b>(5) 고등학교 졸업 후 상담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b> ①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②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상담원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 2010년도 서류심사 합격자 및 2011년도 서류심사(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됨

## 2.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12년 4월 2일(월) ~ 4월 6일(금) 10:00~18:00 (5일간)
  - 마감일(4월 6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처리 함(4월 6일 소인 우편 서류 포함)
    - ※ 협조사항 : 제출기간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 요망
  
- 제출처
  - 주소 : 우)100-824 서울 중구 다산로 210 흥진빌딩 한국청소년상담원 601호 자격연수팀
  - 전화 : 02) 2250-3128/3129
  - 발송봉투 겉면에 “<자격검정 응시원서>” 기재 요망

### 3.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처(한국청소년상담원) 위치·약도

○ 위치 : 서울 중구 다산로 210 흥진빌딩 내 한국청소년상담원 자격연수팀 601호



#### ○ 교통편

- 일반버스

- 신당역 정류장 하차 → 0211, 1014, 1017, 2012, 2015, 2233, 263, 371번
- 하이마트앞 정류장 하차 → 142, 147, 2233, 6211번
- 청구역 정류장 하차 → 0212, 2233번

- 지하철

- ① 5호선/6호선 이용 ⇨ 청구역 하차, 2번 출구/ 흥인초등학교를 지나서 100m 정도 직진
- ② 2호선/6호선 이용 ⇨ 2호선 신당역 4번 출구, 6호선 신당역 6번 출구

나와서 신당사거리에서 약수동 방면 길로 직진  
(※도보로 약 10분-15분 소요)

(※ 2호선을 이용하실 경우 신당역 6호선 출구까지 거리가 길므로 소요시간 계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며, 주차 시 주차요금은 개인부담입니다.

**Ⅲ 유의사항 및 문의 안내**

**1. 원서작성시 유의사항**

- ① 응시등급 : 응시하고자 하는 등급 기재
- ② 현등급 : 기재하지 말 것
- ③ 성명 : 한글 및 한자로 기입할 것
- ④ 성별 : 해당되는 곳에 클릭할 것
- ⑤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록할 것
- ⑥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의 번호를 정확히 기재할 것
- ⑦ 주소 : 우편번호, 번지, 통, 반(동, 호)을 정확히 기재할 것.

**전화번호는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로 정확하게 기재요망**

- ⑧ **현 직장명**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 직위를 정확히 기재요망
- ⑨ e-mail주소 : 본인 e-mail주소를 기재할 것
- ⑩ 학력 :
  - 출신학교명과 학과 및 졸업년월일 기재하고 수학구분 중 해당하는 것에 ○표할 것  
(학력의 작성칸이 부족할 경우,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에 해당되는 학위만** 기록할 것)  
예)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생의 학력이 '00고등학교 졸업 / 00대학교 서양미술학과 졸업 / 00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미술전공 석사 수료 / 00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 수료 / 00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취득'일 경우  
→ 2급 응시자격과 관련된 학력인 **'00고등학교 졸업 / 00대학교 서양미술학과 졸업 / 00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졸업'**만 기록할 것
  - 학점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대학교' 작성 칸에 학위를 취득한 기관명과 학점 운영제를 함께 기록하고 '졸업'으로 처리한다.  
예) 2011년 2월 20일 '00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운영제' 대학교 졸업
- ⑪ **검정선택과목**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선택과목을 기재할 것
  - 응시하고자 하는 검정과목을 다음 <표1>에서 선택하여 기입할 것
  - 1급 및 2급 응시자는 각각 해당 선택과목 4개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기입할 것
  - 3급 응시자는 각각 해당 선택과목 2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기입할 것
  - ※ 선택과목 변경가능일 : 2012년 1월 30일 ~ 2월 8일(10:00~18:00)

<표 1> 등급별 검정선택과목

	구 분	과 목
1급	선택영역(4과목 중 2과목 선택)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2급	선택영역(4과목 중 2과목 선택)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3급	선택영역(2과목 중 1과목 선택)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 ⑫ 필기시험합격년도 : 면접시험 재응시자만 기재
- ⑬ 상담실무경력사항 : 상담실무경력을 기재할 것(상담실무와 관련된 경력 사항 모두 기재)
  -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합판(3.5cm×4.5cm) 상반신 사진을 인터넷으로 원서 작성 시 **파일로 첨부**할 것.
- ※ 접수기간 이후 자격검정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2. 시험 응시시 유의사항

- 1) 수험원서의 허위작성,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 답안카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3) 응시자격 증빙서류의 미도착,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4)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 5) 인터넷 원서 접수시 반드시 본인사진을 등록하여야 하며 본인 사진이 아닐 경우 시험 응시시 응시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6)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7)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학생증(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수험자는 09:0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09:3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8) 객관식 답안카드 정정사항 발생 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및 형별 부분은 수정할 수 없음
  -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 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
- 9)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10)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1)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이후 교시 응시 불가
- 12)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불필요)
- 13)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5)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6)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시계 이용 불가)
- 17) 자격증 교부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격연수 종료 후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답안카드 양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angdamsa>)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자격검정 안내 및 문의처

#### ○ 주요 일정 및 주관 기관

내 용	일 정	주관
- 원서교부 및 접수	2012. 1. 30 ~ 2. 8	한국산업인력공단
- 필기시험	2012. 3. 11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012. 3. 28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청소년상담원
-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2012. 4. 2 ~ 4. 6	한국청소년상담원
- 필기시험합격자(응시자격 증빙서류 심사 합격자)발표	2012. 5. 2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면접시험	2012. 5. 13	한국청소년상담원
- 자격검정 합격자(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연수 공지	2012. 5. 23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연수신청	2012. 5.	한국청소년상담원
- 연수실시	분산 연수 및 집중 연수 7월~10월 중 각급별 100시간이상	
- 자격증 교부	2012. 11	

#### ○ 인터넷 안내

- 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http://www.q-net.or.kr)), 상담원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http://www.youthcounselor.or.kr))
- 자격검정과 관련된 공지사항이 계속 갱신되므로 주기적으로 점검 요망

#### ○ 전화 안내 (※운영시간 : 평일 월~금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공단 HRD고객센터 : 1644 - 8000
- 상담원 콜센터 : 02)2250-3128, 3129

**부록 1**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작성 지침**

**1. 상담실무경력의 인정 기준**

**1) 상담실무경력 인정 기관**

: 상담실무경력은 특정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으로서 <표 1>에 제시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

**<표 1> 상담실무경력 인정 기관**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청소년기본법 제46조)
-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

예) 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민간상담기관 :**

·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한 후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에 대한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  
→ 응시자격 증빙서류 심사시 기관실사 실시 후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2) 상담실무경력의 세부 인정기준

- (1) 상담실무경력은 응시자격관련 학위 취득 및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을 말한다.  
 예) 2008년도 2월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3월부터 상담실무경력을 인정한다.
- (2)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적을 동시에 갖춘 연도만을 상담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예) 3급 응시자가 2007년 11월 ~ 2008년 11월 동안 개인상담을 20회 이상 실시하고, 집단상담을 6시간이상 참가했으나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상담실무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3) 응시등급별로 1년간 상담실무 충족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1년간 기준을 확인하여 작성한다(<표 2> 참조).

<표 2>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시등급	상담유형	실시경력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참가
	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별표1에 의거)

- (4) 상담실무경력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에 대해 연도마다 1년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응시생이 갖춰야하는 총 연수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인정한다.  
 예) 상담관련학과 석사취득자로서 1급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 연도마다 개인상담 50회이상,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하고 총 4년의 상담실무경력(개인상담 200회 이상, 집단상담 96시간 이상, 심리검사 40사례 이상)을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2.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의 작성시 유의사항

- 1)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양식 출력 : 상담원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의 '마이 페이지' 클릭 → '양식다운'클릭 → 응시등급에 해당되는 양식을 클릭, 출력하여 작성
- 2) 응시등급별로 상담실무를 충족해야 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응시자의 응시등급 및 응시자격별 상담실무 충족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상담실무경력증빙서류를 작성한다(<표 3> 참조).  
예) 3급 응시자 중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취득자는 졸업 후 2년의 상담실무경력을 증빙해야하고, 타분야 전문학사취득자는 졸업 후 4년의 상담실무경력을 증빙해야한다.
- 3) 상담의 유형·일시·장소·상담대상·주요 상담내용 등을 작성양식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한다.
- 4) 작성을 완료한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를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한국 청소년상담원 역량개발실 서류접수처에 제출한다(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10조)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 5) 외국에서 쌓은 상담실무경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담실무경력서류를 작성하여 상담실무기관의 기관장 날인을 받아 제출한다. 이때, 외국어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공증을 받아 공증서류 원본과 상담실무경력서류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 서류전형시 기관실사 후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표 3> 각 급별 상담실무경력 기준 세부내역

응시 등급	자격요건	상담유형	1년간 필요경력	실무경력 충족연수	총계	비고
1급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4년	200회	1년간 실시경력의 최소기준이 년도 마다 충족필요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4년	96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4년	40사례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경력 인정)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3년	150회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3년	72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3년	30사례	
2급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3년	150회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3년	72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3년	30사례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경력 인정)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2년	100회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2년	48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2년	20사례	
3급	상담관련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2년	4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2년	12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2년	6사례	
	타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2년	4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2년	12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2년	6사례	
	타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4년	8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4년	24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4년	12사례	
	고등학교 졸업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5년	10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5년	30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5년	15사례	

### 3. 상담실무증빙서류 작성 세부지침

#### 1) 총괄표

- 각 년간 기준은 '년 월~년 월' 형식으로 작성한다.
- 총괄표에 작성된 전체 실시경력의 회수 및 시간, 사례수와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세 부기록에 따른 실시경력이 일치되는지 확인한다.
- 1년간 특정기간 내에 연간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라도 **서류접수 전까지** 충족해야할 전체 년 수 및 개월 수를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예) 3급 응시자 중 타분야 학사취득자로서 상담실무경력을 2년간 증빙해야할 경우 → 2006년 10월부터 상담실무경력을 쌓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2006년 10월~2007년 6월에 걸쳐 개인상담 20회 및 심리검사 3사례를 실시하고, 집단상담을 6시간 참가하고, 2007년 7월~2008년 2월에 걸쳐 동일 실적을 쌓았다고 해도 **2006년 10월~2008년 2월(17개월)**이라는 기간은 **총 2년(24개월)**이라는 년수 및 개월 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상담실무경력 미달로 분류되어,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예 시>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1급)

응 시 자(응시등급) : **김성명** ( 1 급)

**\*\*1년간 기준 최소시간 충족 확인**

연 도 별	상담유형	실시경력
2005년 2월 ~ 2006년 1월	개인상담	총 50 회 이상
	집단상담	총 24 시간 이상
	심리검사	총 10 사례 이상
2006년 2월 ~ 2007년 1월	개인상담	총 50 회 이상
	집단상담	총 24 시간 이상
	심리검사	총 10 사례 이상
2007년 2월 ~ 2008년 1월	개인상담	총 50 회 이상
	집단상담	총 24 시간 이상
	심리검사	총 10 사례 이상
2008년 2월 ~ 2009년 1월	개인상담	총 50 회 이상
	집단상담	총 24 시간 이상
	심리검사	총 10 사례 이상

<예 시 - 총괄표>

별지 제1호 서식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응시자(응시등급) : 한 상담 (1급)

■ 1년 기준 년.월  
 2007.08~2008.07  
 2009.05~2010.04  
 2010.05~2011.04

■ 1급 상담실시경력 1년/3년  
 개인상담 50회/150회  
 집단상담 24시간/72시간  
 심리검사 10사례/30사례

1. 총괄표

연도별	상담유형	실시경력
1년기준 2007년 8월 ~ 2008년 7월	개인상담	총 64회
	집단상담	총 26시간
	심리검사	총 10사례
1년기준 2009년 5월 ~ 2010년 4월	개인상담	총 59회
	집단상담	총 36시간
	심리검사	총 10사례
1년기준 2010년 5월 ~ 2011년 4월	개인상담	총 78회
	집단상담	총 32시간
	심리검사	총 10사례
년 월 ~ 년 월	개인상담	총 회
	집단상담	총 시간
	심리검사	총 사례

※ 연간기준에 맞추어서 적성한다.

상담실무경력 (개인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  
 : 3년 상담실무경력 인정

## 2) 개인상담기록 및 개인상담상세기록

- (1) 전화상담이나 채팅상담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면 개인상담 경력만을 인정한다.
- (2) **‘개인상담 횟수’란** 개인상담 사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수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상담 1년간 기준 50회’의 의미는 내담자 50명에 대한 50사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별로 당해년에 시행된 상담회수에 따라 한 페이지씩 작성하면 된다.**  
 예) 1급 응시자의 경우 2007년 1월~12월 기간동안 개인상담을 A내담자를 대상으로 28회기, B내담자를 대상으로 5회기, C내담자를 대상으로 20회기를 실시했다면 개인상담상세기록은 **내담자별로 1장씩 기록하면 된다.**
- (3) 개인상담기록지에 제시된 전체 상담기간, 상담횟수, 상담기관 및 장소와 개인상담상세기록에 따른 실시경력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한다.
- (4) 개인상담기록에 제시된 **사례 수만큼 개인상담상세기록을 모두 작성한다.**  
 예) ‘개인상담기록’표에 총 10사례를 제시하였다면, ‘개인상담상세기록’은 총 10페이지를 작성해야 한다.
- (5) 개인상담 상세기록의 경우, 작성한 페이지마다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받는다.

### <예 시>

#### 2-1 개인상담기록(1급)

**\*\* 연도별 개인상담기록의 기간과 상담횟수 확인**

사례번호	상담기간	상담회수	상담기관 및 장소
1	2006년 2월 23일부터 2006년 5월 11일까지	10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2	2006년 3월 28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40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3	2007년 2월 28일부터 2007년 6월 10일까지	15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4	2008년 2월 21일부터 2008년 11월 31일까지	35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5	2008년 2월 23일부터 2008년 7월 11일까지	18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6	2008년 2월 28일부터 2008년 9월 29일까지	32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7	2009년 2월 23일부터 2009년 5월 11일까지	10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8	2009년 2월 28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40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총 상담회수		총 200회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50회\*4년=200회 이상**

<예 시 - 개인상담 기록>

2-1. 개인상담기록		■ 1년 기준 년.월 2007.08~2008.07 2009.05~2010.04 2010.05~2011.04	■ 1급 및 2급 1년 실시경력 <b>개인상담 50회(대면상담)</b>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실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사례번호	상담기간	상담회수	상담기관 및 장소
<b>1년기준</b> 1	2007년 8월 2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	31회	한국청소년상담원
2	2007년 10월 10일부터 2008년 7월 28일까지	33회	한국청소년상담원
<b>1년기준</b> 3	2009년 5월 12일부터 2010년 3월 18일까지	30회	학생생활상담소
4	2010년 1월 11일부터 2010년 4월 29일까지	18회	학생생활상담소
5	2010년 2월 8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11회	학생생활상담소
<b>1년기준</b> 6	2010년 5월 3일부터 2011년 4월 6일까지	38회	학생생활상담소
7	2010년 5월 6일부터 2011년 4월 6일까지	40회	학생생활상담소
	년 월 일부터 까지	회	
	년 월 일부터 까지	회	
	년 월 일부터 까지	회	
	년 월 일부터 까지	회	
	년 월 일부터 까지	회	
	년 월 일부터 까지	회	
<b>총 상담회수</b>		<b>총 201 회</b>	

**개인상담 50회(1년)**  
: 3년 상담실무경력 개인상담유형 인정

2-2 개인상담 상세기록(1급)

**\*\* '2-1개인상담기록'에 맞추어 '2-2개인상담상세기록'을 사례별로 한페이지씩 작성**

사례번호	<b>1</b> (개인상담기록지 사례번호 1번 내담자)		상담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원	
내담자 인적사항	성 별	<b>남</b> · 여	연 령	<b>18</b> 세	학 력	<b>고재</b>
상담기간	2009년 2 월 23 일부터 2009년 5 월 11 일까지 (개인상담기록지와 동일)		총 상담횟수		총 10 회	
주호소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담자가 호소한 문제 및 호소 문제의 배경 작성</li> </ul> 예) 자꾸 집을 나가고 싶은데.....					
상담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담자와 협의한 상담목표 및 전략 작성</li> </ul> 예) 1. 내담자와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상담동기를 높이는.....					
상담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상담 진행과정을 간략히 기술</li> </ul> 예) 가출에 대한 욕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목표 달성정도 및 내담자의 남아있는 주제, 추수지도계획 등 기술</li> </ul> 예)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가출횟수가.....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

### 3) 집단상담실시(참가)기록 및 집단별 실시(참가) 상세기록

(1) 집단상담 관련 인정 기준

- 1, 2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로서 실시한 경력을 인정한다.
- 3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을 실시하거나 집단원으로서 참가, 집단상담 심리교육강좌 및 집단상담 workshop에 수강생으로 참가한 경력을 인정한다.

(2) 집단상담의 유형

- 비구조화집단상담 : 집단내 촉진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집단역동을 통해 구성원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집단  
예) T-집단, 참만남집단상담 등
- 구조화집단상담 : 집단원들이 특수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떤 특정한 주제를 이해하거나 혹은 인생의 힘든 전환기를 헤쳐나가도록 돕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  
예) 자기주장행동개발집단, 또래상담프로그램, 가치관명료화집단상담, 자기조절집단프로그램 등

(3) '집단상담 실시(참가)기록'에 제시된 **집단수만큼 '집단별 실시(참가) 상세기록'을 모두 작성한다.**

예) 집단상담 실시(참가)기록지에 총 7개의 집단을 제시하였다면, 집단별 실시(참가)상세기록은 총 7페이지를 작성해야 한다.

(4) '집단별 실시(참가) 상세기록'의 경우, 작성한 페이지마다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받는다.

#### <예 시>

##### 3-1 집단상담 실시기록(1급)

**\*\* 집단상담기록의 기간과 상담시간 확인**

번호	집단명	상담기간	상담시간	실시/참가	상담기관 및 장소
1	가치관 명료화 집단훈련	2005년 2월 23일부터 2005년 5월 11일까지	10 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2	진로탐색 집단상담	2005년 8월 28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14 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3	사이코드라마	2006년 6월 25일부터 2006년 9월 9일까지	24 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4	분노조절 집단상담	2007년 4월 20일부터 2007년 6월 21일까지	16 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5	게임중독예방 집단상담	2007년 4월 20일부터 2007년 7월 14일까지	8 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6	진로탐색 집단상담	2008년 9월 9일부터 2008년 11월 31일까지	16 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7	사이코드라마	2008년 10월 23일부터 2008년 12월 1일까지	8 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총 집단상담 시간			96시간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24시간\*4년=96시간 이상**

<예 시 - 집단상담 실시기록 : 1급, 2급의 경우>

3-1. 집단상담 실시기록		■ 1년 기준 년,월 2007.08~2008.07 2009.05~2010.04 2010.05~2011.04		■ 1급 및 2급 1년 실시경력 개인상담 50회(대면상담) <b>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b> 실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번호	집단명	상담기간	상담시간	실시	상담기관 및 장소
<b>1년기준</b>					
1	신나는 학습클리닉	2008년 1월 3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10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2	청소년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2008년 6월 19일부터 2008년 7월 10일까지	16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b>1년기준</b>					
3	의사소통 항상집단상담	2010년 3월 2일부터 2010년 4월 27일까지	18시간	실시	학생생활연구소
4	의사소통 항상 집단상담	2010년 3월 3일부터 2010년 4월 28일까지	18시간	실시	학생생활연구소
<b>1년기준</b>					
5	차이존송김 항상 집단상담	2010년 6월 29일부터 2010년 7월 2일까지	16시간	실시	학생생활연구소
6	자기효능감 항상 프로그램	2010년 10월 7일부터 2010년 11월 25일까지	16시간	실시	학생생활연구소
총 집단상담 시간			총 94 시간		

집단상담 24시간(1년)  
: 3년 상담실무경력 집단상담유형 인정



3-2. 집단별 실시 상세기록

\*\* '3-1 집단상담 실시기록'에 맞추어 '3-2 집단별 실시 상세기록'을 집단별로 한페이지씩 작성

번호	1	집단명	가치관명료화 집단훈련	
참가인원	10명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원	
집단참가대상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기타			
집단상담기간	2009년 2월 23일 ~ 2009년 5월 11일	집단상담시간	10시간	
집단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훈련 목표 작성</li> </ul> 예) 가치관 명료화의 개념을 이해.....			
집단의 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의 과정 및 내용 작성</li> </ul> 예) '선택 행동'의 불가분성을 이해하기위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상담목표 달성정도, 추수상담 계획 등 기술</li> </ul> 예) 집단원들로 하여금 선택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

※ 3-2. 집단별 참가 상세기록 (3급 응시자만 작성)

\*\* '3-1 집단상담 참가기록'에 맞추어 '3-2 집단별 참가 상세기록'을 집단별로 한페이지씩 작성

번호	1	집 단 명	부모교육 workshop (*해당 범위: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 상담관련workshop 및 상담관련교육과정 참가)	
지도자 성명	교육강사 혹은 상담전문가	지도자 소속 및 직위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조교수	
참가 인원	50 명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원	
집단상담기간	2009년 6월 25일 ~ 2009년 6월 25일		집단상담시간	6 시간
집단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교육workshop의 학습 목표 작성</li> </ul> 예) 부모의 자기성장 및 자질 향상을 통해.....			
집단의 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orkshop 과정 및 내용 작성</li> </ul> 예) 다시보는 나와 우리가족 : 가계도를 작성한 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내용에 대한 느낀 점 등 약술</li> </ul> 예) 자녀와의 관계 및 가치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

### 3) 심리검사 실시기록 및 심리검사 상세기록

(1) 심리검사 관련 인정 기준

- 1, 2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만을 인정
  - 3급 : 별도의 심리검사기준을 두지 않음(단, 출처와 용도가 분명치 않은 인터넷 검사 및 설문조사용으로 실시한 검사는 제외)

(2) 심리검사의 유형

- 전국 표준화검사 :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행동의 표집을 수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비교하는 체계적 절차를 통해 제작된 심리검사
    - 예) MMPI, MBTI, TCI, 지능검사, 적성검사 등
  - 투사검사 : 비구성적인 자극 즉 애매한 자극에 대한 개인반응을 분석하는 심리검사
    - 예) Rorschach Test, TAT, BGT, HTP, DAP, SCT 등
- ※ 간단한 체크리스트 형식의 검사는 제외

(3) 심리검사 실시기록에 제시된 사례수만큼 심리검사 상세기록을 모두 작성한다.

예) '심리검사 실시기록'지에 총 40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다면, '심리검사 상세기록'은 총 40페이지를 작성해야 한다.

(4) 심리검사 상세기록의 경우, 작성한 페이지마다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받는다.

## <예 시>

### 4-1 심리검사 실시기록(1급)

\*\* 1, 2급의 경우, 전국표준화검사와 투사적 검사만 인정

사례번호	검사일시	검사종류	실시기관 및 장소
1	2005 년 2 월 28 일	MBTI	한국청소년상담원
2	2005 년 3 월 31 일	적성탐색검사	한국청소년상담원
3	2005 년 4 월 20 일	로샤	한국청소년상담원
4	2005 월 4 월 20 일	MMPI	한국청소년상담원
5	2005 년 4 월 20 일	HTP	한국청소년상담원
6	2005 년 4 월 21 일	SCT	한국청소년상담원
7	2005 년 4 월 21 일	K-WISC	한국청소년상담원
8	2005 년 5 월 3 일	학습방법진단검사	한국청소년상담원
9	2005 년 5 월 3 일	MBTI	한국청소년상담원
10	2005 년 5 월 10 일	MBTI	한국청소년상담원
~	년 월 일	생략	
40	2008 년 12 월 24 일	학습방법진단검사	한국청소년상담원
총 검사사례		총 40 사례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10사례\*4년=40사례 이상

<예 시 - 심리검사 실시기록>

4-1. 심리검사 실시기록			
사례번호	검사일시	검사종류	실시기관 및 장소
1년기준	2007년 12월 13일	진로탐색검사	한국청소년상담원
		MBTI	한국청소년상담원
		MBTI	한국청소년상담원
		진로탐색검사	한국청소년상담원
		MBTI	한국청소년상담원
		MMTIC	한국청소년상담원
		MBTI	한국청소년상담원
		진로탐색검사	한국청소년상담원
		진로탐색검사	한국청소년상담원
		MMPI	한국청소년상담원
1년기준	2009년 9월 3일	MMPI	학생생활상담소
		문장완성검사	학생생활상담소
		MMPI	학생생활상담소
		MMPI	학생생활상담소
		문장완성검사	학생생활상담소
		MMPI	학생생활상담소
		MMPI-2	학생생활상담소
		K-WAIS	학생생활상담소
		Rorschach	학생생활상담소
		문장완성검사	학생생활상담소
1년기준	2010년 4월 29일	K-WAIS	학생생활상담소
		MMPI-2	학생생활상담소
		MMPI-2	학생생활상담소
		문장완성검사	학생생활상담소
		MMPI-2	학생생활상담소
		K-WAIS	학생생활상담소
		MMPI-2	학생생활상담소
		MMPI-2	학생생활상담소
		K-WAIS	학생생활상담소
		Rorschach	학생생활상담소
	2011년 1월 14일	Rorschach	학생생활상담소
총 검사사례		총 30 사례	

■ 1년 기준 년월  
 2007.08~2008.07  
 2009.05~2010.04  
 2010.05~2011.04

■ 1급 및 2급 1년 실시경력  
 개인상담 50회(대면상담)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심리검사 10사례(1년)  
 : 3년 상담실무경력 심리검사유형 인경

**4-2. 심리검사 상세기록**

**\*\* 심리검사 기록사항과 아래 양식이 동일한지 확인**

사 례 번 호	1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원		
피검자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연 령	17 세	학 력	고 퇴
검 사 일 시	2009년 2 월 28 일 (심리검사기록지와 동일)		검사소요시간	1 시간		
실시검사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TI(심리검사기록지와 동일)</li> </ul>					
검 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TJ(검사결과 및 해석)</li> </ul> <p>예)(15,24,32,16) 현실감이 뛰어나고 일을 조직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으며.....</p>					
피검자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검사 평가 약술</li> </ul> <p>예)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일중심적으로.....</p>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

<예 시 - 심리검사 상세기록 - MBTI>

심리검사 실시기록 사례번호와 동일					
사 례 번 호	2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원	
피검자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연 령	학 령	
검 사 일 시	년	월	일	검사소요시간	
실시검사종류	MBTI				
검 사 결 과	선호에 의한 당신의 유형	E	S	T	P
	선호 환산 점수	17	37	11	45
피검자에 대한 평가	<p>관대하고 느긋한 성격이다. 선입견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개별적 이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능하다. 자 비타이론적이며 무제에 대한 재간재은 모세하는 경우 주</p>				

피검자  
인적사항  
상세히 기록

심리검사 실시기록 사례번호와 동일

진로탐색검사 MBTI MMTIC MMPI  
MMPI-2 문장완성검사 K-WAIS 로샤 등  
검사 이름 정확히 기록

환산 점수  
상세히 기록

심리검사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 기술

피검자 평가 상세 기록  
- 8줄 이상으로 요약

기관장의 직인을  
반드시 확인

상담기관장 한국청소년상담원장

<예 시 - 심리검사 상세기록 - MMPI>

심리검사 실시기록 사례번호와 동일																												
사 례 번 호	10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원																									
피검사 인적사항 상세히 기록	성 별	남 · 여	연 령																									
	학 령																											
검 시 일 시	년 월 일	검사소요시간	진로탐색검사 MBTI MMTIC MMPI MMPJ-2 문장완성검사 K-WAIS 토사 등 검사 이름 정확히 기록																									
실시검사종류	MMPI																											
검 시 결 과																												
	<table border="1"> <thead> <tr> <th>L</th> <th>F</th> <th>K</th> <th>Hs</th> <th>D</th> <th>Hy</th> <th>Pd</th> <th>Mf</th> <th>Pa</th> <th>Pt</th> <th>Sc</th> <th>Ma</th> <th>Si</th> </tr> </thead> <tbody> <tr> <td>59</td> <td>61</td> <td>55</td> <td>57</td> <td>96</td> <td>74</td> <td>62</td> <td>51</td> <td>54</td> <td>58</td> <td>50</td> <td>33</td> <td>63</td> </tr> </tbody> </table>			L	F	K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59	61	55	57	96	74	62	51	54	58	50	33
L	F	K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59	61	55	57	96	74	62	51	54	58	50	33	63																
피검사에 대한 평가	<p>현재 내담자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문제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상척도는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우울한 동시에 활동수준이 떨어져있고 무기력감</p> <p>피검사 평가 상세 기록 - 8줄 이상으로 요약</p>																											
기관장의 직인을 반드시 확인																												
상담기관장		한국청소년상담원장 인																										

<예 시 - 심리검사 상세기록 - 문장완성검사>

심리검사 실시기록 사례번호와 동일			
사 례 번 호	12	실시기관 및 장소	학생생활상담소
피검자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연 령
검 사 일 시	년 월 일	검사소요시간	진로탐색검사 MBTI MMTIC MMPI MMPI-2 문장완성검사 K-WAIS 로사 등 검사 이름 정확히 기록
실시검사종류	문장완성검사		
검 사 결 과	문항	13. 나의 어머니는 대단하다, 26. 어머니와 나는 그럭저럭 잘 지낸다. 39. 대개 어머니들이란 대단하다. 49. 나는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버릇이 없다,	
	어머니에 대한 태도	2. 내 생각에 가장 아버지는 19. 대개 아버지들이란 하다, 29. 내가 바라기에 아버지는 50. 아버지와 나는 하다,	
	아버지에 대한 태도	12.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24. 우리 가족이 나에게 대해서 35. 내가 아는 대부분의 집안은 48.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화목했다.	
	가족에 대한 태도	8. 남자에 대해 무엇보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20. 내 생각에 남자들이란 10. 남자가 같이 있는 것을 볼 때 23. 결혼 생활에 대한 37. 내가 성교를 했다면 47. 나의 성생활은	
	남성에 대한 태도	14.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17. 어렸을 때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27. 내가 지지른 가장 큰 잘못은 46. 무엇보다도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무응답)	
	이상관계 및 결혼 생활에 대한 태도	7. 내가 어렸을 때는 33.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45.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최악감에 대한 태도	4. 나의 장래는 11. 내가 늘 원하기는 16.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18.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 28. 언젠가 나는	
	과거에 대한 태도	30. 나의 이말은 41. 나의 평생 가장 하고 싶은 일은 42. 내가 늙으면	
	미래에 대한 태도		
	목표에 대한 태도		
피검자에 대한 평가	단답형의 답변으로 보아 반영적인 내담자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내담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내담자의 특성이 보인다.		
기관장의 직인을 반드시 확인 상담기관장 _____ 학생생활상담소장 _____ 인			
피검사 평가 상세 기록 - 8줄 이상으로 요약			

<예 시 - 심리검사 상세기록 - 진로탐색검사>

4-2. 심리검사 상세기록

심리검사 실시기록 사례번호와 동일

사 례 번 호	1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원		
피검자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연 령	학 령			
검 사 일 시	년	월	일	검사소요시간			
실시검사종류	진로탐색검사						
검 사 결 과	병도	일관도	검사전 유형	검사후 유형	전로코드 1차	전로코드 2차	
	보통	상	SCAI	SAI	SS	SA	
	유형	실재형 (R)	탐구형 (I)	예술형 (A)	사회형 (S)	기업형 (E)	관습형 (C)
	점수	25.6	14.0	27.9	60.5	14.0	11.6
피검자에 대한 평가	내담자의 진로탐색검사 결과 변별도는 보통으로 검사결과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사 전후						
	피검사 평가 상세 기록 - 8줄 이상으로 요약						
기관장의 직인을 반드시 확인							
상담기관장 한국청소년상담원장 인							

피검사 인적사항 상세히 기록

진로탐색검사 MBTI MMTJC MMPI MMPI-2 문장완성검사 K-WAIS 로샤 등 검사 이름 정확히 기록

빈 칸이 없도록 기록

기관장의 직인을 반드시 확인